# 암보장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 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 은 "주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읍니다.

③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④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⑤주계약이 해지 (解止),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별표 1에 정하는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의 진단확정은 국내의료법에 정한 병원 (치과병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읍니다) 또는 의원이나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의료장비, 시설 및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조직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 (X 선, 내시경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3조 (입원치료의 장소)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국내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이나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의료장비, 시설 및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료기관에의 입원이어야 합니다.

제 4조 (특약의 무효)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5조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 1구좌당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제 1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1,000,000원 지급

2. 피보험자가 제 1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치료급여금 75,000 원 지급 ( 1회에 한함)

3. 피보험자가 제 1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6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5 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 20,000 원 지급

4.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으로 6일이상 계속 입원한 후 사망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여 퇴원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하였을 때 : 1 회 퇴원에 대하여 요양급여금 200,000 원 지급
단, 퇴원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사망 또는 재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수 1일당 10,000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6조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7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전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 세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읍니다. 그러나 제 1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 1 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8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復活) 청약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암입원증명서 등)
3. 퇴원증명서 (가정요양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암확인진단서
7.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效力喪失)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제 6조, 제11조 제 3항, 제12조 제 1항) 에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 (背書) 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읍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약관 및 단체할인특약 규정의 준용)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주계약에 단체할인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할인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 해약환급금 예시표

*남자*

(1구좌, 40세, 10년전기월납)

| 구분 / 경과기간 | 1개월 | 6개월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납 입 보 험 료 | 720 | 4,320 | 8,640 | 25,920 | 43,200 | 60,480 | 86,400 |
| 해 약 환 급 금 | 230 | 1,350 | 2,700 | 6,620 | 8,300 | 7,360 | 0 |

*여자*

| 구분 / 경과기간 | 1개월 | 6개월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납 입 보 험 료 | 660 | 3,960 | 7,920 | 23,760 | 39,600 | 55,440 | 79,200 |
| 해 약 환 급 금 | 200 | 1,170 | 2,340 | 5,720 | 7,140 | 6,320 | 0 |

〈별표 1〉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제 2 조에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제 8 회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
| 입술(口唇)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40 |
| 혀 (舌)의 악성신생물 | 141 |
| 침샘 (唾液腺)의 악성신생물 | 142 |
| 잇몸(齒肉)악성신생물 | 143 |
| 구강저위부 (口腔底位部)의 악성신생물 | 144 |
| 기타 및 부위 불명의 구강의 악성신생물 | 145 |
| 중인두 (中咽頭)의 악성신생물 | 146 |
| 비인두 (鼻咽頭)악성신생물 | 147 |
| 하인후 (下咽頭)의 악성신생물 | 148 |
| 부위 불명의 인두의 악성신생물 | 149 |
| 식도(食道)의 악성신생물 | 150 |
| 위 (胃)의 악성신생물 | 151 |
| 소장 (小腸)의 악성신생물(십이지장 포함) | 152 |
| 대장 (大腸)의 악성신생물(직장(直腸)은 제외) | 153 |
| 직장(直腸)및 직장S상 결장이행부(結腸移行部)의 악성신생물 | 154 |
| 원발(原発)로 명시된 간장(肝臟) 및 간내담관(肝內胆管)의 악성신생물 | 155 |
| 담낭(胆嚢) 및 담관(胆管)의 악성신생물 | 156 |
| 췌장(膵臟)의 악성신생물 | 157 |
| 복막(腹膜) 및 후복막조직(後腹膜組織)의 악성신생물 | 158 |
| 원인 및 상태불명의 소화기(消化器)의 악성신생물 | 159 |
| 비(鼻), 비강(鼻腔), 중이(中耳) 및 부비강(副鼻腔)의 악성신생물 | 160 |
| 후두(喉頭)의 악성신생물 | 161 |
| 기관(気管), 기관지(気管支) 및 폐(肺)의 악성신생물 | 162 |
| 기타 및 원인 상태불명의 호흡기(呼吸器) 악성신생물 | 163 |
| 골(骨)의 악성신생물 | 170 |
| 결합직(結合織) 및 기타 연부조직(軟部組織)의 악성신생물 | 171 |
| 피부의 악성신생물 | 172 |
|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173 |
| 유방(乳房)의 악성신생물 | 174 |
| 자궁경부(子宮頸部)의 악성신생물 | 180 |

| | |
|---|---|
| 융모상피종(絨毛上皮腫) | 181 |
| 기타 자궁의 악성신생물 | 182 |
| 난소(卵巢), 난관(卵管) 및 자궁광간막(子宮廣間膜)의 악성신생물 | 183 |
| 기타 및 원인 상태불명의 여성 성기의 악성신생물 | 184 |
| 전립선(前立腺)의 악성신생물 | 185 |
| 고환(睾丸)의 악성신생물 | 186 |
| 기타 및 원인 상태불명의 남성 성기(男性性器)의 악성신생물 | 187 |
| 방광(膀胱)의 악성신생물 | 188 |
| 기타 및 원인 상태불명의 비뇨기(泌尿器)의 악성신생물 | 189 |
| 눈(眼)의 악성신생물 | 190 |
| 뇌(腦)의 악성신생물 | 191 |
| 기타의 신경계 악성신생물 | 192 |
| 갑상선(甲狀腺)의 악성신생물 | 193 |
| 기타의 내분비선(內分泌腺)의 악성신생물 | 194 |
| 기타의 불명확한 부위(部位)의 악성신생물 | 195 |
| 속발(續發) 및 원인 상태불명의 임파절의 악성신생물 | 196 |
| 속발성(續發性)의 호흡기 및 소화기의 악성신생물 | 197 |
| 기타 속발성 악성신생물 | 198 |
| 부위(部位)가 명시되지 않은 악성신생물 | 199 |
| 임파육종(肉腫) 및 세망육종(細網肉腫) | 200 |
| 호지킨씨병 | 201 |
| 기타의 임파조직의 신생물 | 202 |
| 다발성골수종(多発性骨髓腫) | 203 |
| 임파성 백혈병(白血病) | 204 |
| 골수성 백혈병(骨髓性 白血病) | 205 |
| 단구성 백혈병(單球性 白血病) | 206 |
| 기타 및 원인 상태불명의 백혈병 | 207 |
| 진성 적혈구 증가증(眞性赤血球增加症) | 208 |
| 골수선유증(骨髓線維症) | 209 |

제9회 이후 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 통계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